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00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조승환 · 안철수 · 김승수
김은혜 · 서천호 · 이성권
이종욱 · 광규택 · 윤용근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협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보관·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읍면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	③ ----- ----- ----- ----- ----- ----- ----- ----- ----- ----- ----- ----- ----- <u>--2032년 12월 31일--</u>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